

산업자문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13. 1.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산업자문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자문 방법 등)

- ①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 등의 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업체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자문 요청을 받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산업체가 직접 산업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는 배정절차 없이 산업자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실시가능하다.

제4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5백만원 초과(부가가치세 미포함) 시, 산업체에 참여한 산업체와 산학협력단이 각각 80 : 20의 비율로 배분하며,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업체에게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납부된 산업체는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산업체에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시지급하며, 과세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실적평가반영) 산업체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 실적으로 인정하며,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 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7조(기타사항) 산업체는 신청서와 산업체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자문 신청서

산업자문 신청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희망자문기간 산업자문 주제	2012 . . ~ 2012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교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참여율(100%)
현재의 문제점				
산업자문 희망사항				
성공시 기대효과				
기타제안				

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

201

신청기관: 대표: (인)

(사전에 선정된 경우) 경희대학교 산업교원: (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2]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명			
자문일시(기간)	2012. . ~ 2012.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위와 같이 신청기관(업체)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

산업교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 1부

산학협력단장 귀하